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0 발의연월일: 2024. 6. 24.

발 의 자:이학영·박홍근·김교흥

박정현 • 이정문 • 이수진

한정애 · 김영배 · 한민수

전재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 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(안 제 51조제6항).

법률 제 호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75세"를 "65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1조(진료) ① ~ ⑤ (생 략)	제51조(진료) ① ~ ⑤ (현행과		
	같음)		
⑥ <u>75세</u> 이상으로서 다음 각	⑥ <u>65세</u>	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		
람은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			
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			
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			
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			
진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			
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			
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			
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			
다.		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		